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.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자원순환과

제정 1999 · 1 · 11 조례 제 267호 개정 2000 · 10 · 16 조례 제 353호 개정 2003 · 7 · 30 조례 제 461호 개정 2007 · 1 · 4 조례 제 646호 개정 2009 · 7 · 30 조례 제 780호 전부개정 2012 · 3 · 9 조례 제 923호 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조례 제1074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5 · 9 · 25 조례 제1171호 전부개정 2018 · 12 · 31 조례 제1453호 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주민(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)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 지급
 - 2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
 - 3. 「폐기물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의 지원
 - 4.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3조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 · 징수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

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.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(이하 "종량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1.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
- 2.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의 기능을 갖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(이하 "개별계 량장비"라 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
- 제4조(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·재질 등)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·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 례」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,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따른다.
 -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·운반이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거나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)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이 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.
 - ② 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·배출장소·배출 용기·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 -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(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. 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.
 - 1.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 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
 - 2.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

거나,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할 것

- 제6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 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 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·판매시설·주택 등의 사업시행자·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에게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7조(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)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,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개별계량장비의 본체는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시장은 개별계량장비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에게 선불카드 수수료 징수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장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세척 등 위생관리와 유지·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(茶類)나 빵・떡・과자・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・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.
- 제9조(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)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리방법을 이행할 것

-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.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 - 2.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등을 표기한 후 해당 사업장 부지에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
 - 3.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 전용수거용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
- 제10조(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)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1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)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·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·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준용)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〈2018 · 12 · 31 조례 제1453호 전부개정〉

- 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7항 중 "「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」"를 "「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[별표 1]

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

(제3조제4항 관련)

1. 종량제봉투

용량(리터)	1	3	5	10	20	50
판매가격(원)	50	110	180	350	700	1,750

2. 개별계량장비: kg당 90원

[별표 2]

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

(제5조제3항 관련)

1. 배출요령

- 가. 이물질을 제거하고,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
- 나.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・간장・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
- 다. 통무, 통배추, 통호박, 양배추, 수박, 메론 등 부피가 큰 채소류나 과일 껍질은 잘게 잘라 배출
- 라. 비닐ㆍ티백 등으로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제거 후 배출
- 마.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한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 기에 배출하거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개별계량장비에 배출

2. 분리배출 기준

구분	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		
과일류·견과류	- 복숭아, 살구, 자두, 감 등 핵과류의 씨		
	- 호두, 밤, 땅콩, 파인애플,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		
채소류・곡물류	- 양파, 마늘, 옥수수, 고추 등의 껍질 및 마른 줄기류		
육류	- 소, 돼지, 닭 등의 털 및 뼈다귀		
갑각류 • 어패류	- 게, 가재, 조개, 소라, 전복, 홍합, 멍게 등의 딱딱한 껍데기		
百百斤·勺叫开 	- 복어 내장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질		
알껍질	알껍질 - 달걀, 오리알, 메추리알, 타조알 등의 껍데기		
찌꺼기	- 커피, 차류(녹차 등), 한약재 등의 찌꺼기		

※ 상기 표의 물질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.

[별표 3]

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

(제6조제3항 관련)

1. 설치대상

- 가. 「주택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다중 주택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 단지
- 나. 「주택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- 다. 「주택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 스텔
- 라. 「건축법」 시행령 [별표 1]에 따른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

2. 설치기준

- 가. 1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주택: 3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
- 나. 60세대 이상 주택: 60세대당 120리터 개별계량장비 1대 이상 설치다만,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60세대 기준 1대 설치 후 추가 100세대 당 1대 이상 설치
- 다.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: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
- 3. 설치장소: 건축물 부지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의 진· 출입이 쉬운 입구 등
- 비고: 같은 부지 또는 연접한 부지에서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 1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